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21.	
연석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서민 주거안정, 사회복지 및 친환경 분야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세목과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 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감면

- 1)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36조의3)
- 2)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안 제35조)
-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감면
 - 1) 코로나19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한 감면 일몰 연장 및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율 확대(안 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안 제47조의4)

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감면

- 1) 농어촌 인구유입,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귀농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감면 일몰 연장 및 재설계(안 제6조, 제10조)
-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일몰 연장(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라.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송 및 교통수단의 감면 연장 (안 제64조, 제66조, 제70조)
- 2) 초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46조)

마.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지·교육 지원

- 1)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연장 및 재설계(안 제17조, 제22조의2, 제29조)
- 2)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바. 제도개선 등 기타

- 1)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 법제화(안 제2조의2)
- 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92조의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 농지"를 "취득(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제1항에 따른 농지"로,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를 "임야,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로, "50을 2021년 12월 31일"을 "25를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기"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로, "2 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0"을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을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0"을 "5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을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0"을 "5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을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제4조제2항"을 "「지방세법」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용면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된"을 "말소되거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매각・중여하는"으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 "취득세의 100분의 25"로,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을 "50(신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된"을 "말소되거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 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매각・증여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4년 12

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를 "(취득일 이후"로, "이하"를 "다만,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하"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담보"를 "주택(「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항 제2호가목 중 "75를"을 "50을"로 하며, 같은호 나목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1가구"를 "주택(「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오피스텔을 포함하며, 1가구"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하다.

제36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 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지방세법」 제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으로, "("를 "(취득일 이후"로, "이하"를 "다만,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매각・증여"를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본다)을 취득(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을 "5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을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0"을 "30[감염병 의 예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 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1"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을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30" 을 "3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호 나 목 중 "50"을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75"를 "75[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 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로 하며, 같 은 호 나목 중 "75"를 "75(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로 하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의3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0"을 "5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

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0"을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같은 조 제3항 본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30"을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을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경감한다"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15를 추가하여 경감한다"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양도하는"을 "승계취득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

월 31일까지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재산" 을 "재산(「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기 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_ 제4조제1호"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_ 제4조제1항"으로.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2021년 12 월 31일까지 경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으로. "2021년 12월 31 일까지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로. "50을 경 감한다"를 "2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제65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자동차등의 가액이"를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할 세액이"로, "가액을"을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6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초과하는"을 "65만원을 초과하는"으로, "50만원을 공제한다"를 "65만원을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을 한다.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전단 중 "건축물등에"를 "건축물등(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밀억제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를 "과밀억제권역"으로, "20 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 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2조의2제1항제1호 중 "150원부터 500원"을 "250원부터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부터 1천원"을 "500원부터 1,600원"으로 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6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04조의8제1항 및 제122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은 제외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1호 중 "가산금의 납부의무가"를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로,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를 "가산금 및 「지방세기본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4 및 제16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4(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조에서 "전자신고" 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 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동일한 방 법으로 공제한다.

제167조의5(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 ① 제79조에 따른 법인 또는 제80조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 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밀역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근로자가 그 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지방이전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지방세법」 제103조의15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을하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 1. 제79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 제80조에 따른 공장
- ② 제1항의 적용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의3제1항, 제62조"를 "제62조"로, "제76조제2항"을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지방세법」제6조제20호에 따른 연부계 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세액을 말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2 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대 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생 략) (성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원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원화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원화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야 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①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야 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 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전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야 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 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기용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한 한다. 기용령령으로 정하는 라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후기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검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 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면) ①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u>야 한다.</u>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중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 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주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	
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u>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u>	농지(<u>「지방세법」 제11조제1</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u> -
	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	
<u>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u>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	
<u> 장용지</u> 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	<u>장용지</u> 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2. (생 략)
- ②・③ (생 략)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 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 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취득(취득
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제1
<u>항에 따른 농지</u> <u>임야, 제2</u>
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
12월 31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 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 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 략)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 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 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 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 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 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 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 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 영어 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1. ~ 5. (생 략)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 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 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 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ее ве о/ Ф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
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5를 2024년 12월 31일
1. ~ 5. (현행과 같음)
②
•

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 분을 <u>2021년 12월 31일</u>까지 면 제한다.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 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u>취</u> <u>독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u> <u>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u>

<u>2024년 12월 31일</u>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
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2024년 12월 31일</u>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u>주</u>
<u>택개량</u>

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 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 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 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 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한다. <단서 신설>

<u>2024년 12월 31일</u>
<u>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u>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지
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ㅇ
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
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으로 한정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
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
용하기 위하여 <u>취득하는</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
동차세(이하 "자동차세"리
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

네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u>취득하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
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
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
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
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u>2021년 12월 3</u>
<u>1일</u> 까지 면제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1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
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
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
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
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취득하여 등록하
<u>는</u>
<u>2024년 12월 31</u>
<u>일</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 • 2. (현행과 같음)

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 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 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3. (생 략)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 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 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 육법 | 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4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②
<u>2024년 12</u>
월 31일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한 감면) ①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u>에 0 중소에 여십 사동에게</u>

<u>2024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2
<u>2024년 12</u>
월 31일
]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한 감면) ①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	
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	
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u>를 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	
한다.	
1. · 2. (생 략)	Ì
세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	ズ
면) ① ~ ⑤ (생 략)	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Ì
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	
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	
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	Ì
다.	Ì
1. • 2. (생 략)	Ì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u>2월 31일</u> 까지 취득하는 부동	Ì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Ì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u>2024년 12월 31일</u>
2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
일
1.•2. (현행과 같음)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
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6
1.•2. (현행과 같음)
3. 2024년 12월 31일
가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22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 위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 --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 --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 --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

- <u>30[</u>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
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u>100분의 40]</u>
나
50(감염병 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u>60)</u>
<u>.</u>
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 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 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 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 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 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u>.</u>
1. ~ 4. (현행과 같음)
②
<u>2024년 12월 31일</u>

하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 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 --- 2024년 12월 31일-----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 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 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u>202</u>	<u>202</u>
<u>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u>4년 12월 31일</u>
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i>략</i>)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②
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	
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	
한다.	
l.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 2024년 12월 31일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
취득세의 100분의 <u>50</u> 을 경	<u>50</u> [감염
감한다.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저 면) ① ~ ③ (생 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 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 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 라 한다)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
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
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6
<u>0]</u>
나
<u>50(감염병 전문</u>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u>60)</u>
세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취득하여
등록하는

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 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 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 1. ~ 4. (생 략)
- ⑤ (생략)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 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1. (생략)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u>2024년</u>
12월	<u> 31일</u>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에 디	l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2 -	
1. (३	현행과 같음)

- 2. 2024년 12월 31일-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50</u>을 경 강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용도로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 가
<u>5</u> 0[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
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
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6
<u>0]</u>
나
<u>50(감염병 전문</u>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u>60)</u>
3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 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1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 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 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 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 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 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 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u>2024</u>
<u>년 12월 31일</u>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u>2024년 12월 31일</u>
l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 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 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 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 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 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 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 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 략)

- ③ (생 략)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 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 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

<u>.</u>
1.・2. (현행과 같음)
②
2024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 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 ·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 획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 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 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 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다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u>2024년 12월 31일</u>
「지방세법」제4
<u>조</u>
1
<u>재산세</u>
2

-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u>재산세</u>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 2. (생략)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 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재산세</u> -
3. <u>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u> -
(5)
<u>말</u>
소되거나「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u>매각 • 증여하는</u>
1.·2. (현행과 같음) ⑥
취득세의
<u>기구제의</u> 100분의 25 50(신축하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1. • 2. (생 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 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 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 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 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 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 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 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

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각각 20
24년 12월 31일
<u>.</u>
1. · 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u>2021년 12월 31</u>
<u>일</u> 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
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
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과 <u>「지방세법」 제4조제2항</u> 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
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김
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 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다)를 면제한다.
-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 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 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u>2024년 12월 31</u>
일
<u>「지방세법」 제4조</u>
··
1
재산세

2
개산세
<u>-11 Ca -11</u>

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 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 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 외하다.

1. • 2. (생 략)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 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 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 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③ (생 략)

면) ① (생 략)

<u>.</u>
3. (현행과 같음)
②
<u>말</u>
소되거나「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u>매각 • 증여하는</u>
,
1.•2. (현행과 같음)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
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 25를 각각 2024년 1 2월 31일----.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 이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③ (생략)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연

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u>주택을 담보로</u>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u>2021년 12월 31일</u>까지 감면한다.

- 1. (생략)
-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 가.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 세의 100분의 <u>75를</u> 경감한 다.
- 나.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된 <u>주택(1가구</u>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u>202</u> 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 략)

주택(「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u>을 담보</u>
2024년 12월 31일
1. (현행과 같음)
2
가
<u>50을</u>
나
<u>200</u>
<u>만원</u>
②
<u>주택 (「주택법」제2조제4</u>
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
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
<u>하며, 1가구</u> <u>2024</u>
<u>년 12월 31일</u>
1 • 9 (청해고 가으)

③ (생략)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제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 제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③ (현행과 같음)	
]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u>2024년</u> 1	<u> 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36조(무주택자 주택	공급사업 지
원을 위한 감면)	
<u>20</u> 1일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 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 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 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 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 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 "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 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 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 자와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 하인 경우로서「지방세법」 제 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 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 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

획법 _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 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 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 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 1.•2.(생 략)
- ② (생 략)
-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 | <삭 제> 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세법 :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미 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رو	ע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포함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 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 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 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 매각·증여(배우자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 로 사용하는 경우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 면) ① (생 략)

사유 없이 주택--(취득일 이

--. 다만. 취득일 전에 전입신 고를 한 경우에는 취득일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

다. 이하 ---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본다)을 취득(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 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매각 • 증여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u>2021</u>	② <u>2024년</u>
<u>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u>	<u>12월 31일</u>
<u>일</u>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	
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1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5</u>	<u>50</u>
<u>0</u> 을 경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
	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
	염병 전문병원"이라 한다.)의
	<u>경우에는 100분의 60]</u>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	2
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u>5</u>	<u>50</u>
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	100분의 60)
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한다.	
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특례) ①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감한다. 병의 예방 및 법률 제8조의 정된 병원(이행 "감염병 전문 다.)의 경우에 이그		
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I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생 략)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함의 예방 및 법률 제8조의 정된 병원(이항 "감염병 전문" 다.)의 경우에 이그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생 략)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기관 기계	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생 략)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 감한다. 변의 예방 및 법률 제8조의 정된 병원(이형 "감염병 전문된 다.)의 경우에 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1. (생 략)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 감한다. 1. (현행과 같음) 2. 2024년 12월 31일	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 감한다. 2. 2024년 12월 31억 	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2. <u>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u>	2. <u>2024년 12월 31일</u>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	<u>2월 31일</u> 까지 취득하는 부동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30</u> 을 경 감한다. 병의 예방 및 법률 제8조의 정된 병원(이는 "감염병 전문 다.)의 경우에 이는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 감한다. 병의 예방 및 법률 제8조의 정된 병원(이희 "감염병 전문" 다.)의 경우에 이]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취득세의 100분의 <u>30</u> 을 경 감한다. <u>병의 예방 및 법률 제8조의 정된 병원(이</u> <u>"감염병 전문</u> 다.)의 경우에 <u>이</u>	세를 각각 경감한다.	
감한다. 병의 예방 및 법률 제8조의 정된 병원(이 "감염병 전문 다.)의 경우에 인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
법률 제8조의 정된 병원(이 "감염병 전문 다.)의 경우에 <u>이</u>	취득세의 100분의 <u>30</u> 을 경	
정된 병원(이 <u>"감염병 전문</u> 다.)의 경우에 <u>이</u>	감한다.	<u>병의 예방 및</u> :
"감염병 전문 다.)의 경우에 <u>이</u>		<u>법률</u> 제8조의2
<u>다.)의 경우에</u> <u>0]</u>		정된 병원(이히
<u>다.)의 경우에</u> <u>0]</u>		"감염병 전문병
<u>0]</u>		
		_
다 해당 부동산 취득의 이우ㅣ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익 이후	나

② (생략)

1. (현행과 같음	-)
2. 2024년 12월	31일
가	
	<u>30[감염</u>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u>법률 제83</u>	드의2에 따라 지
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	[문병원"이라 한
<u>다.)의 경우</u>	P에는 100분의 4
<u>0]</u>	
나	
	<u>50(감염병 전</u>
	<u>경우에는 100분</u>
<u>의 60)</u>	
② (현행과 같음	2)

- ③ 삭 제
-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1. (생략)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30</u>을 경 감한다.
 -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u>50</u>을 경감한다.

4
1. (현행과 같음)
2. 2024년 12월 31일
가
<u>30(감염</u>
<u>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u>
<u>00분의 40)</u> 나
나
50(감염병 전문
50(교급 8 건년

⑤ (생략)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 제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자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1. (생 략)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75</u>를 경 감한다.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u>60)</u>	-,	

⑤ (현행과 같음)
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
면)
1. (현행과 같음)
2. 2024년 12월 31일
가
75[7].01

	<u>5]</u>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u>75</u> 를 경감한다.	<u>7</u> 5(감염병 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u>85)</u>
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
한 감면) ① (생 략)	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u>2021</u>	② <u>2024</u> 년
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	12월 31일
<u>일</u>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	
한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감면)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	
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u>	2. 2024년 12월 31일
<u>2월 31일</u> 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	
세를 각각 경감한다.	,
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	가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00분의 <u>50</u> 을 경감한다.	<u>50</u>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u>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u>
	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
	<u>는 100분의 60]</u>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u>50</u> 을 경감한다.	<u>50(</u> 감염병 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u>60)</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또 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 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 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대한 면제) ①
2024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②

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아니한다.

④ (생 략)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 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 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 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u>2024년 12월 31일</u>
③
<u> 20</u>
<u>24년 12월 31일</u>
④ (현행과 같음)
⑤

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경감한다.

1. (생략)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u>2024년 12월 3</u>
<u> 1일</u>
⑥ (현행과 같음)
⑦
1. (현행과 같음)
2. 2024년 12월 31일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30</u>을 경 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 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 ① 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 - 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 - 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 - 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 -

가
<u>30</u>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
정된 병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한
<u>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u>
<u>0]</u>
나
50(감염병 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u>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u> <u>60)</u>
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 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 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 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 략)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 른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 · 실습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u>2024년 12월 3</u>
1일
· 1.·2. (현행과 같음)
•
·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교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제43조(평생교육
면제) ①・② (생 략)	면제) ①・②
③ 평생교육단체가 <u>2020년 1월</u>	③
<u>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u> 까지	31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	
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

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1. • 2. (생략)

④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2024년 12월</u>
<u>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 1. (생 략)
-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 나.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 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 (현행과 같음)
2. <u>2024년 12월 31일</u>
가.・나.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
<u>4년 12월 31일</u>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생 략)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 저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u>
<u>All</u>
2024년 12월 3
1일까지 재산세
④ (현행과 같음)
세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
면) ①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각각 면	
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②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	
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	
해서는 <u>재산세(「지방세법」 제</u>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	월 31일
<u>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u> 까	
지 면제한다.	<u>.</u>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여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대한 감면) ①
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u>2021년</u>	<u>2024</u> 1
<u>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다만,	<u>12월 31일</u>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	
한다.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 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 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 략) ③ (생략)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 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 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 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 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u>2024년 1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의 35(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관 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 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④ (생 략)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저 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 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 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u>경감한다. 다만, 「조</u>
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
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각각 100분의15를 추가하여
경감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
승계취

아니하다. 1. • 2. (생 략) 다.

② (생략)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 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 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 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 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51조(신문 · 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신문 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 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 각 <u>2021년 12월 31일</u>까지 경감 -- <u>2024년 1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2024년 12월 31일</u>
 레디2/카프 트리키스 드세 펜션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각면)
감면)
000413 1000 0100

득하는

하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 과세특례) ① -----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 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 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024년 12월 31일-----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 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면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 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 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 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 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 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 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 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 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 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재산세를 각각
<u>2024년 12월 31일</u>
,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2024년 12월 3
<u>2024년 12월 3</u> <u>1일</u>

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 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 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 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 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 세법 1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u>2024년</u>
<u>2024년</u> <u>12월 31일까지 면제</u>
12월 31일까지 면제
<u>12월 31일까지 면제</u>
12월 31일까지 면제 <u>2024년 12</u>
12월 31일까지 면제 2024년 12 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12월 31일까지 면제 2024년 12 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12월 31일까지 면제 2024년 12 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12월 31일까지 면제 2024년 12 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12월 31일까지 면제 2024년 12 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12월 31일까지 면제 2024년 12 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L.	~	3.	(생	략)
3	디	음	각	호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 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 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 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 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제한다.

1. ~ 3. (생략)

- 4.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 산
-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

1. ~ 3. (현행과 같음)
3
<u>2024년 12월 31</u>
<u>일</u>
<u>2024</u>
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재산(「통계법」제22조에 따
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징한다.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 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 ----- 2024년 12월 31 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 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 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 는 제외한다)한다. 다만, 취득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 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 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 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 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31일까지 면제한다. 1. ~ 8. (생 략) ⑥·⑦ (생 략)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 별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 또 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 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 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 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 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 하다. ⑨ (생략)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 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

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

1일
1. ~ 8.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
<u>별법」 제4조제1항</u>
같은 법 제10조
<u>2024</u>
<u>년 12월 31일</u>
⑨ (현행과 같음)
(1)

----- 2024년 12월 3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 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 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 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 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 6. (생 략)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 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_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 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u>2</u> 024년 12월 31일까
지 경감
<u>, о н</u>
<u>2024년 12월 31일까</u>
<u>지 등록면허세</u> <u>25</u>
<u>를 경감한다</u>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에 대한 감면) ①
2024년 12월 31일
<u> </u>
1. ~ 6. (현행과 같음)
②
<u>2024년 12월 3</u>
1일

③ (생 략) <신 설>

④ (생략)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광업권의 설정 • 변경 • 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 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 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 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한다.

②・③ (생 략)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 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 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 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

- ③ (현행과 같음)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 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 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 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024년	12월	31일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 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 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 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 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 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 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u>2</u> 024년
<u>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u>.</u>
②
2024년
<u>2024년</u> 12월 31일
<u>2024년</u> <u>12월 31일</u>
<u>12월 31일</u>
<u>12월 31일</u>
12월 31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1. • 2. (생략)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

1.•2. (현행과 같음)
③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 월 31 월
·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41 12 0 21 0
<u>2024년 12월 31일</u>

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 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 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 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 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 차등의 <u>가액을</u>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생 략)
-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 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1. 2. (생 략)
-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
 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서 40만원을 공제한다.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

10101111111
이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1.・2. (현행과 같음)
3 <u>2022년 12</u>
월 31일
4
<u>2</u> 024년 12월 31일

자도차드에 브라디어아 하 세애 **|**

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
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
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
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
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취득세액이 <u>50만원</u>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취득세액이 <u>50만원을 초과하</u>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u>50만원</u>을 공제한다.
-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 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
세특례) ①
2024
년 12월 31일
1 <u>65만원</u>
2 <u>65</u> 만원을 초과하
<u>는</u> <u>65만원</u>
<u>을 공제한다</u> .
②

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 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 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하다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 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 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 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 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u>2024년 12월 31일</u>
,
③
<u>2024년 12월 31일</u>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
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 2. (생략)

- ② (생략)
-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대외무역법」에 따른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생 략)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u>2024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2024년 12월 31일까지 과</u>
세
<u>2024년 12월 31일까</u>
지 면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2. (생략)
- ② 삭 제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 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 를 경감한다.
-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

<u>2024년 12월 3</u>
<u>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③
<u>2024년 12월 3</u>
<u>1일</u>
,
④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 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 "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 "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 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 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 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 1. (생략)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u>2024년 12월 31일</u>
~~~~~~~~~~~~~~~~~~~~~~~~~~~~~~~~~~~~~
에 대한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2 <u>2024년 12</u>

<u>2월 31일</u>까지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생략)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 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 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 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 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 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 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 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 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 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

월 31일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224
<u>2024</u>
<u>2024</u> 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u>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u>
<u>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u>
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 1. ~ 3. (생 략)
- ②・③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저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 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 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 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생략)
-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 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2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네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1. (현행과 같음)
2
가

----- 건축물등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 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 함하다.

나. • 다. (생 략)

- ⑤ (생 략)
- ⑥ 삭 제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삭 제> 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 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저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 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 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 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나. • 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u>디</u>	#통령	성으로 :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	에서 '대	개도시'
<u>라 한다)</u>			
	- <u>과밀</u>	억제권역	역
	_		12월 3
1일			

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 징한다.

#### 1. • 2. (생략)

-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대도</u> <u>시</u>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 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 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제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 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u>대도시</u>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

	-
	-
	_
	_
	-
	-
1. · 2. (현행과 같음)	
2	_
<u>과밀억제권역 외</u>	_
	-
	_
<u> 20</u>	)
24년 12월 31일	_
③ <u>과</u> 밑	]
억제권역	-
	-
	-
]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_
감면) ①	_
	-
과밀역	1
제권역 외	_

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 2. (생략)

# ② (생 략)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 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각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u>2024년</u>
12월 31일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
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 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 략)

② (생략)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 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3조에 따른 개 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 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 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

<u>2024</u>
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
의 개량에 대한 감면)

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 일까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 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_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 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 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 공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 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 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

<u>2</u>	024년 12월 31
일	
300= (-1=1=1-1-1-1-1	•
제83조(시장정비사	업에 대한 감
면) ①	
	<u>20</u>
<u>24년 12월 31일</u> -	
	·
②	

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 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 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③ (생략)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u>2024년 12월 31</u>
<u>일</u>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u>2024</u>
년 12월 31일
②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한다) 및 「지방세징수법」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계좌 자동이체 방

<u>2024년 12월 31일</u>
<u>.</u>
③
<u>2024년 12월 3</u>
1일
<u>1                                    </u>
 네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
네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

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 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 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 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③ (생 략)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 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공공

1
<u>250원부터</u>
800원
2
<u>500</u>
원부터 1,600원
 ②·③ (현행과 같음)

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을 말한다)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 세 감면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호에 따른 대주 또는 기술제 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이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
액공제·감면 등) ①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를 공제·감면한다. <u><단서 신</u> 설>

#### ②・③ (생 략)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 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 특례제한법 : 제99조의10에 따 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 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 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 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 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 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라 한다)를 적용한다.

1. 국세 <u>가산금의 납부의무가</u>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 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 제20조, 제104조
의8제1항 및 제122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ㆍ감면은 제외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
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1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가

----- 가산금 및

# 납부의무 면제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 면제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4(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 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한다.

제167조의5(지방이전 기업의 근로

<u><신 설></u>

자에 대한 감면) ① 제79조에 따른 법인 또는 제80조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 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등기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근로자가 그 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 에 지방이전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제1항에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 1. 제79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 사무소
- 2. 제80조에 따른 공장 ② 제1항의 적용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 제한) ① -----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 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1
<u>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u>
(「지방세법」제6조제20호
에 따른 연부계약으로 취
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

산을 취득하는 경우, 1년

### 나. (생 략)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 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 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 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 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③ (생 략)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 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 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세액을 말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제62조
레 <b>74フ 레1</b> 호
<u>제74조제1항,</u>
<u>제76조제2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1 1 17 ©
<u>202</u>
4년 12월 31일

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 1. 2. (생 략)
-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 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 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 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 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 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 1. ~ 4. (생 략)
-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 6. 7. (생 략)
-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u>.</u>
1.・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31제1항
②

1. ~ 4. (현행과 같음)

월 31일-----

의31제1항-----

----- 2024년 12

6.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 |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

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 | 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시기부터 적용한다.

- 1. 2. (생 략)
-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u>2</u> 022년 1월 1일
- 4. (생략)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1.・2. (현행과 같음)
3 <u>2</u>
023년 1월 1일
4.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3		